

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24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나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횟수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 반 행 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회	2회	3회 이상
가.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메인 이름등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	법 제27조 제1항제1호	300	700	1000
나. 법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주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27조 제1항제2호	300	500	1000